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영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8. 25.

발의의원 : 이영애, 이동욱,  
김재용, 이재화,  
박종필, 박소영,  
허시영, 김정옥,  
임인환, 손한국,  
조경구, 류종우,  
박우근 의원  
(13명)

##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관계 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 지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관련 연수 과정 운영
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실 등 운영
4. 그 밖에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 계 법 령

### □ 학교보건법

제2조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 ③ (생략)

##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생략)